##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8

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: 장경태·박민규·강준현

복기왕 • 박용갑 • 전진숙

김승원 • 박선원 • 김용민

민형배 · 안태준 · 김성환

최민희 • 이재관 • 양부남

이병진 • 문금주 • 허종식

이정헌 · 이학영 의원

(2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,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기계적 항소는 지 난 2022년 9월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문제 로, 각 심급별 최대 3심까지 연속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검 사의 기계적 혹은 정치적 목적 아래 이루어진 상소로 인한 물질적·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커. 이러한 사정을 검사 근무평정에 반영할 필요 가 있음.

이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,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의2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제2항 중 "자질"을 "근무성적 평정기준에는 기소사건 대비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검사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의2(근무성적 등의 평정)	제35조의2(근무성적 등의 평정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<u>자질</u> 평정기준에는	② <u>근무성적 평정기준</u>
성실성,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	에는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
포함되어야 한다.	비율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
	<b></b>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